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자전 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정격하중 100톤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용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5호하목(4)(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일 것

별표 2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1) 정격하중 3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37,700원
2) 정격하중 3톤 이상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48,000원
3) 정격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59,700원
4) 정격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70,700원
5) 정격하중 100톤 이상	1대에 대하여 281,700원

별표 23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이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